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Directions of the Work and Program based on the Supporting Law, Policy and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y

이윤정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 전공

Yoon-Jung Lee(yoon2525@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9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법령과 정책의 주요 구조와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필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내용들을 추가 분석하고 수요 연구를 고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며,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 셋째는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한국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종적 측면만이 아닌 횡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연구되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사업 | 다문화가족프로그램 |

Abstract

The aims of this research are to grasp the supporting volition of the government as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y and discussing direction of the work and program for them. Therefore, this article inquired into the structure and the view through the supporting the law in 2008 and policy in 2009 of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contents of the work and program divided into the fields of essentiality and speciality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s a result, this article implied three directions ; first, the practicality of contents based on the needs and requir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econd, the conne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life cycle based on circumstances and resources, third, the mutual direction of effect based on promoting the character of a nation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and others.

■ keyword : | Multicultural Family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Law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Work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 |

* 이 논문은 2008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8-0147)
접수번호 : #091214-001
접수일자 : 2009년 12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4월 22일
교신저자 : 이윤정, e-mail : yoon2525@hoseo.edu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국가발전도와 세계화 물결에 의해 국내 인구 이동의 빈도가 급증하고, 더불어 최근 한국 남성의 외국인과의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8년 한국 내 외국인 주민의 수는 891,341명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106,884명으로 증가하여 주민등록 전체 인구 48,593,665명의 2.2%에 속하는[1][2] 실로 다문화 사회가 됨에 따라 이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 관심과 노력의 1차적 대상은 외국인 아내를 둔 다문화가족으로, 한국 농촌의 인구구조 변동이 주된 배경이어서 이들을 통한 지역사회 존속과 발전, 나아가 국가의 생산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들의 현상에 주지하고 생활적응과 자녀양육 및 교육, 가족문제 등에 연구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문화가족 현상에 기반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연구[3-5],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연구[6]가 있고, 다문화가족 현상 이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와 함의를 다루고 있는 주제[7][8]가 있으며, 다문화가족 부부 및 부모로서의 어려움, 갈등, 스트레스 등을 다루고 있는 주제[9][10]가 선행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의 제정과 시행, 그리고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의 추진 등을 배경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간의 사회적 노력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방향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충분히 다룬 자료는 찾기 어렵다. 아마도 사회적 현상에 보다 적극적 대응은 필요하였으나, 체계적 노력은 미흡한 결과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법령과 정책을 토대로 살펴보고, 법령의 전달체계가 추진해 온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그 취지와 효과에 대해, 그리고 대상과 주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의지 파악을 위해 법률과 정책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2009년 정책자료를 토대로 그 구조와 주된 관점을 파악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탐색을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수요를 살펴본다.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수요를 부가적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법률과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논할 것이다.

표 1. 한국의 외국인 주민 현황 (단위:명)

연도	구분	총계	외국인						한국인			외국인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	재외 동포	기타 외국인	소계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2008	전체	891,341	767,823	437,727	102,713	56,279		171,104	65,511	41,672	23,839	58,007
	남성	482,870	440,405	301,556	13,711	29,599		95,539	12,628	2,991	9,637	29,837
	여성	408,471	327,418	136,171	89,002	26,680		75,565	52,883	38,681	14,202	28,170
2009	전체	1,106,884	925,470	575,657	125,673	77,322	43,703	103,115	73,725	41,417	32,308	107,689
	남성	584,697	514,009	386,204	15,190	39,031	20,841	52,743	15,798	2,047	13,751	54,890
	여성	522,187	411,461	189,453	110,483	38,291	22,862	50,372	57,927	39,370	18,557	52,799

(출처 : 행정안전부,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09)

II. 본론

1.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1.1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되어 당해 9월 2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11].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령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란 첫 번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령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의한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두 번째,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동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12]. 법령의 구조는 그 제정 목적(제1조)과 대상자의 정의(제2조)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4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제5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제6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8조),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제9조), 아동 보육・교육(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12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제13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제14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제16조)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내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비율과 그 가족 및 자녀의 사회적응과 국민성 함양을 위한 내용이 주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은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시행규칙은 시행령에 제시된 주요내용에 더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1.2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2006년 4월 법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통해 수립·추진된 바 있다[13].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2009년 상반기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 발표되었는데, 그 추진배경은 다문화가족 및 자녀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곤란 등이 발생되고 지역별·서비스별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 향후 한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당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비전은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로써 정책의 목표는 첫째,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이며 둘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셋째,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넷째, 국민의 다문화 사회이해 증진이다.

표 2.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의 구조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 (16개 조항)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 9조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제10조 아동 보육·교육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4개 조항)	제1조 목적 제2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4조 권한의 위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4개 조항)	제1조 목적 제2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제4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정책의 주요 방향은 가족전체 대상 포괄적 정책 추진과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민·관 협력의 효율적 사업 추진이다[14].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는 총 7개 영역으로, 결혼준비기와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시기, 생애주기 전(全)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결혼준비기에는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으로 결혼당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의 사전정보 제공과 한국인 예비 배우자의 사전교육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형성기에는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족 생활보장,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과제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자녀양육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과제로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을 배양하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며, 부모 및 자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과제가 포함된다. 자녀교육기에는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언어발달,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빈곤·위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가족역량강화기에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과제가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이 해체될 경우에는 해체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요보호 아동, 한부모가족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대국민 다문화 인식을 제고하는 등 다문화사회 이해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는 생애주기 전(全)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부터 전국민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증진까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다음에 소개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그 실행은 체계화와 실효성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

다문화가족지원법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포함해 총 119개가 설치되어 있다[15][16]. 법령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의하면, 각 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지원 사업과 정보제공 및 홍보,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주무부처는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기획,

표 3.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주기별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결혼준비기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지원	• 국제결혼 탈법 방지 및 결혼당사자 인권보호 • 결혼이민예정자 사전정보 제공 • 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
가족형성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 •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생활보장 •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 예방
자녀양육기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 임신출산 지원 •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 배양 •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 • 부모·자녀 건강관리
자녀교육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	• 아동 언어 학습·정서 발달 지원 •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 빈곤·위기 아동 청소년 지원 • 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가족역량강화기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사회연계 강화
가족 해체시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 요보호 아동 지원
↑ ↑ ↑		
전(全)단계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사업추진체계 정비 • 대국민 다문화 인식 제고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2009)

홍보하고, 직접적인 서비스 개발과 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프로그램은 [표 4]와 같이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자조집단모임 지원 등의 필수영역과 정서지원,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화영역으로 구분되어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별도로 방문교육사업과 통번역서비스사업,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영농기술교육사업 등이 있고 기타영역에 있어 육아정보나눔터 설치 및 운영사업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탐색을 위해 세부추진사업과 방법에 있어 중복되는 별도 지원사업 등의 분야는 제외하고 논하기로 한다.

① 필수영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필수영역 사업 및 프로그램은 총 5개 영역이다. 그 중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과 표준어 교육 등을 기초, 초급, 중급, 고급 등의 수준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과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비즈니스 한국어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영역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교육, 역사교육, 생활교육을 주제로 진행하는데,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법률과 인권, 역사와 문화, 공공기관 및 공중도덕 등 각종 분야의 생활정보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가족교육 영역은 가족간 유대감 및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가족통합교육과, 부부교육, 시부모교육, 결혼이민자 교육, 배우자교육, 자녀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상담 영역

표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및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

구분	사업영역	대상	사업범주	세부추진내용
필수영역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기초과정 초/중/고급과정 기타과정	• 단어 및 문장교육, 수준별 표현법 • 생활 표준어 교육 •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및 비즈니스 한국어반 등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결혼이민자	사회교육	• 다문화 및 다문화사회의 이해 • 법률 및 인권 • 결혼과 가족의 이해
			역사교육	•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 한국의 역사와 문화
			생활교육	• 공공기관 및 공중도덕 • 건강과 의료, 임신 및 출산 • 정보화교육 •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 한국의 교육제도 • 각종 분야의 정보제공
	가족교육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 가족구성원과의 유대감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부부교육	• 부부 각각의 원가족에 대한 가족역사, 관계 등 가족정보의 이해 • 부부역할에 대한 이해
			시부모교육	• 며느리 출신국 문화의 이해, 시부모역할 정립 • 가족생활, 가족관계 교육
			결혼이민자교육	• 부부관계, 부모역할, 의사소통방법 등 교육
			배우자교육	• 다양한 문화 이해, 부부관계, 부모역할, 육아, 의사소통 이해
			자녀교육	• 결혼이민자 부모의 문화이해, 가족관계, 자녀 역할교육 등
	상담		가족상담 / 개인상담	• 부부문제, 부모문제, 자녀문제, 성문제 등 가족관계문제 • 각종 법률문제, 경제문제, 심리치료 및 기관연계, 기타 등
	자조집단	다문화가족	가족통합	•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정착기반 마련 및 소속감 향상
			배우자	• 건강한 가족성립 및 배우자역할 인식도모
			시부모	• 며느리 나라의 문화이해 및 고부간 갈등 해소
			통합국적	• 다양한 국가의 결혼이민자들 간에 정보교류/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적응기반 마련
			국적별	• 출신국별 자조집단 구성해 결혼이민자간 정서적 지지 및 멘토역할 수행
특화영역	정서지원	다문화가족	• 멘토링, 문화체험, 보건 및 의료, 동아리활동, 자녀지원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 컴퓨터 및 정보화교육, 직업교육, 다문화강사양성교육, 통번역사 양성교육, 상담원양성 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가족 지역구성원	• 다문화강사파견, 다문화심포지엄, 다문화캠페인, 다문화축제, 다문화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	지역구성원	• 한국어강사양성, 다문화강사양성, 전문상담원양성, 산모도우미 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등	

(출처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2008)

은 가족상담과 개인상담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족관계에 관한 제반문제와 심리치료가 다루어지고 있고, 경제문제, 법률문제, 기관연계 등의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자조집단을 위한 영역으로는 배우자 모임, 시부모 모임, 통합국적 결혼이민자 모임, 국적별 결혼이민자 모임,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조집단모임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 달라지기는 하나, 관리기관의 매뉴얼 보급 및 교육 등을 통해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있다.

② 특화영역

특화영역은 크게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서지원 분야와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분야, 다문화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이 포함되며, 지역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정서지원 분야에는 멘토링, 문화체험, 보건 및 의료 부분, 동아리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며, 다문화가족역량강화 분야에는 컴퓨터 및 정보화교육, 직업교육, 다문화강사양성교육, 통번역사 양성교육, 상담원양성교육 등이 포함된다. 다문화 인식개선 분야에는 다문화강사파견, 다문화심포지엄, 다문화캠페인, 다문화축제, 다문화 교육 등이 포함되며,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는 한국어강사 양성, 다문화강사 양성, 전문상담원 양성, 산모도우미양성, 자원봉사자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다.

2.2 관련 단체 · 기관의 현황

전달체계 외에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실시되기도 한다. 최근 2007년 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38개의 관련 단체 및 기관을 대상[1]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7]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기관들 중 가장 수행비율이 높은 사업 및 프로그램[2]은 기초생활 정보안내와 한국문화탐방으로 총 30개 기관(78.9%)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의료상담이 24개 기관(63.2%), 법률상담이 21개 기관(55.3%), 한국어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20개 기관(5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자녀교육상담, 취업훈련 등의 프로그램 시행비율은 높지 않아 이용자 욕구에 부합하는 컨텐츠 개발과 시행이 보완적으로 요구된다.

1)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어울림, 오산결혼이민자센터,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부산외국인노동자선교회,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남양주건강가정지원센터, 천주교구리이주센터, 태화사회복지관 등 총 38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

2) 한국어교육, 모국어교육, 컴퓨터교육, 기초생활정보안내, 가정폭력상담, 자녀상담, 의료/법률상담, 문화예술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 한국문화탐방, 이주민상담원양성교육, 직업훈련 등

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수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을 위해 시도된 정부 차원의 수요조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최근 일부의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혹은 실태 자료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부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는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제공으로 19.6%, 3순위는 부모상담 및 교육으로 13.2%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6]. 이러한 결과는 설동훈 외의 연구[18]에서 한국어교육이 39.7%, 취업교육훈련 15.2%, 정보화교육 13.9%인 것과는 다소 상이하나 그 내용의 맥락을 정리하면, 다문화가족은 '소통'과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콘텐츠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설동훈 외의 연구[18]에서는 결혼기간별로 다문화가족이 요구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요구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즉,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73.4%이나, 결혼기간이 2-4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59.8%로 낮아지고, 해당 기간에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제공에 대한 필요도는 10.7%로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에 대한 필요도가 10% 미만이기는 하나 다른 기간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결혼주기 혹은 생애주기별로 서비스 욕구가 변화함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6],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가 사업 및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부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였는데, '보육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21.2%)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배우자 또는 가족의 허락과 지원'이라는 응답(15.7%)이었다. 더불어 가족의 허락과 지원에 대한 요구는 결혼기간이 2년, 4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부부 및 가족생활이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김유경의 연구[6]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결혼이민자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더불어 쌍방향간의 이해를 도모하며, 지역사회 내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련 내용의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활용 및 적용 가능한 내용, 생활의 변화에 따른 욕구반영, 미시환경과 거시환경에서의 쌍방향적 이해도 증진이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될 수 있다.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국가 법령과 정책, 그 전달체계와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통한 수요 측면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내용의 실용성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에 의해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12개 관련부처가 총 7개 과제, 27개 소과제를 분담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당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행해 왔으며, 이후 법령의 제정, 강화대책마련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업의 전달체계가 통일되면서 국가의 공식적 지원과 보호,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배경이 되는 관련 통계자료의 보고나 요구도 분석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이 생략된 채 사업과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령과 정책에 반해 사업과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 내 적응에 초점을 둔 다소 동화주의적 입장에 기반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즉, 2008년도에 실시된 다문화가족실태조사나 설동훈 외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6][18]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현재의 법령과 정책에 기반하여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다각적 이해와 관점으로 실용적 내용으로의 구성과 검토가 재고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과 배경, 그리고 그들이 현재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지를 고려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단계화하고 콘텐츠와 지원전략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소통을 위한 언어교육, 한국인 2세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로서의 어려움과 갈등이 실용적인 콘텐츠로 공급되기를 희망하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검토하고,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과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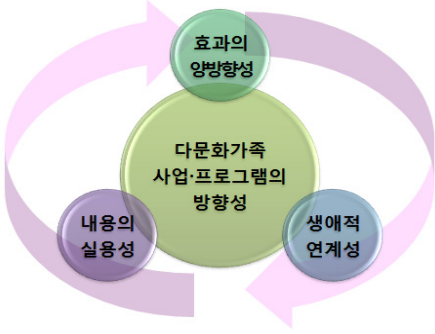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둘째, 생애적 연계성이다.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세부과제들은 차세대 생산인구인 그 자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20-30년 후 자녀가 한국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가족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자녀를 둘러싼 미시환경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혹은 그들의 주된 양

육자 역시 자녀와 함께 성장・발전해야 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활욕구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즉,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 혹은 가족의 발달주기에 어떠한 과업들이 요구될 것인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결혼이민자 당사자라면, 결혼이민자의 욕구와 발달, 그리고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배우자와 시부모의 생애적 발달 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포함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부부의 부모와의 동거율[3]은 약 44%로 26%인 한국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 소통과 부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6].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는 일반적인 한국 가족의 생애주기와 비교할 때, 환경과 자원의 요소에서 다르게 구성된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비교적 낮으며, 배우자의 연령은 높은 편이고 시부모와의 교류의 가능성이 크다. 즉,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은 가족생활적응과 병행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의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시행착오와 갈등이 보다 원활한 흐름 속에 긍정적인 결과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 배우자의 생애주기, 시부모 등의 가족구성원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관계적 측면과 그 연계성에 주목하여 생활과업들이 도출되어야 하며, 사업과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변화하고 있는 인구구조와 환경을 직시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서는 나와는 다른 생활문화와 관습, 언어를 지닌 한국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 낯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지,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 역시 적응의 시간과 과정이 요구된다. 즉, 시민성과 국민성 제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들과 장기적으로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한국인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업과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이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둔 것에서부터 이웃과 지역민을 위한 사회변화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재정립, 이해, 적응의 측면을 고려한 컨텐츠 개발과 적용이 이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행방법상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다문화가족'을 보다 뚜렷이 구분하도록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함께 소통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의식과 가치관이 재정립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 영역, 혹은 통합 영역으로써의 사업과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빈번히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3) 시부모 모두, 시아버지 혹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 모두, 장인 혹은 장모와 동거하는 비율

Ⅲ. 요약 및 제언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법령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실효를 거두어 다문화사회로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가도록 그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조와 주된 관점을 고찰하고, 법령의 전달체계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해 온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하고, 관련 단체와 기관의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한 수요를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3가지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방향성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다. 그동안 사회변화에 따른 움직임에 서투르게 현실의 이해를 간과하고 사업과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면, 이제는 그들이 처해있는 현실과 욕구에 기반하여 실용적 내용의 구성과 체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주기적 관점의 연계성이다. 다문화가족 역시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따라서 그들의 욕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동시에 발전을 추구한다. 차세대 한국인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미시환경 요소

인 가족구성원들의 생애주기 혹은 가족발달주기를 세심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발달과업이 일반 한국가정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생애주기적 관점의 연계성을 사업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의 효과의 양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재정립, 이해, 적응의 측면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과 적용이 지속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실행은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빈번히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곧 한국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의미한다.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금은 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차세대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균형적 감각을 길러야 할 시기이다. 이제 다문화 사회인으로서의 가치와 의식, 생활양식과 사회 발전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환경이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그에 부합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행정안전부,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2008.

[2]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2009(7).

[3] 김미숙,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격", 한국인구학, 제31권, 제3호, pp.27-55, 2008.

[4]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1권, pp.209-236, 2008.

[5] 표명환, "재한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pp.97-120, 2009.

[6] 김유경,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51호, pp.29-52, 2009.

[7] 김혜영,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 제2호, pp.7-37, 2008.

[8] 서연주, "한국 문화에 나타난 다문화 인식 양상 고찰", 국어문학, 제47권, pp.213-234, 2009.

[9] 남윤주, 이숙,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3호, pp.357-367, 2009.

[10] 장진경, 전종미, 신유경, "ABCX모델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의 디스트레스(Distress)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제4호, pp.103-116, 2009.

[11] http://www.law.go.kr

[12] 법률 제8937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3.21.

[13]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 2006.

[14]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2009.

[15]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2008.

[16] http://mfsc.familynet.or.kr

[17]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가족백서*, 2007.

[18] 설동훈,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 : 현황과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pp.1-20, 2006.

저 자 소 개

이 윤 정(Yoon-Jung Lee) 정회원

- 1994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사)
- 1996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석사)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소비자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전공교수

<관심분야> : 중노년기 여가생활양식, 노인소비자, 고령친화산업, 기능성게임, 가족자원경영, 건강가정, 다문화가족